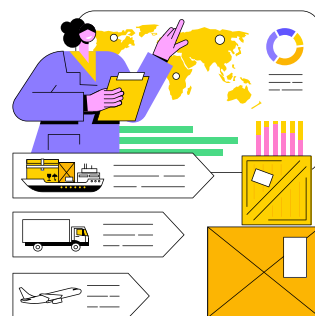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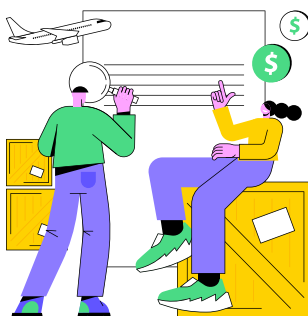


TRADE & ORIGIN REPORT



미국 추가 관세 조치에 따른 베트남 관세 및 원산지 동향





미국 추가 관세 조치에 따른 베트남 관세 및 원산지 동향



황혜준
KOTRA 호치민 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센터장

1. 들어가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관세 정책 변화는 베트남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불확실성과 부담을 안겨주었다. 특히 지난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는 베트남 수출기업에 최고 46%에 이르는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초기 혼란은 베트남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상호관세 유예에 따라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관세 조치 및 혼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변화하는 대외 통상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가 요구된다. 본 글에서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과 주요 관세 및 원산지 동향 그리고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질적인 원산지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미국 추가 관세 조치에 따른 베트남 정부 대응

베트남은 미국 시간 4월 2일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후 가장 발 빠르게 협상을 요청하고 대응한 국가 중 하나이다. 베트남 현지 뉴스와 산업무역부(MOIT)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상호관세 발표 즉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하고 긴급 내각 회의를 거쳐 미국에 관세 적용 유예를 요청하였다. 특히 미국과 베트남 간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MFN(최혜국대우) 세율을 선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후 4월 9~10일까지는 베트남 정부 특사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조속히 협상에 착수 하였으며, 이는 한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국보다도 한 발 앞선 대응이었다. 고위급 무역 협상 1차 회의는 4월 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으며, 해당 회의에서 관세 유예 연장, 미국산 수입 확대, 원산지 규정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3차 협상이 6월 9일~1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4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베트남과 미국 대표단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모든 협상 분야에서 격차를 줄였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베트남의 관세 및 원산지 동향

① 최혜국대우 세율(MFN 세율) 인하

베트남은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31일 시행령 73/2025/ND-CP를 공표하며 자동차, 목재, 에탄올, 식품 및 농산물과 같은 16개 품목군의 최혜국대우 세율(MFN세율)을 수정 및 보완하도록 발표했다. 미국과 베트남 간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물품이 수입될 경우 MFN세율 및 기본 관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관세율 인하 조치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사전 대응 차원의 조치로, 주요 수입 품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하기 표는 MFN세율이 조정된 대상 품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HS CODE	품목	기존 관세율(%)	변경 관세율(%)
0207.14-20	냉동 닭다리	20	15
0808.10-00	사과	8	5
0809.29-00	체리	10	5
2207.20-19	에틸 알코올	10	5
2711.11-00	LNG	5	2
4421.99-99	기타 목재 제품	25	0
8703	자동차	45-64	32-50
9401.61-00	나무 프레임 의자	25	0

출처 : 시행령 73/2025/ND-CP

② 원산지 규정 강화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는 미국의 동남아 우회수출 단속 및 원산지 검증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515/BCT-XNK 및 09/CT-BCT를 공표하며 수입 원자재 원산지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수출기업의 경우 원자재 공급원을 다양화하여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요청하였으며, 원자재 관련 서류(상업송장, 거래명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수출입관리국 및 유관기관에는 수입 원자재 원산지 확인 및 수출 상품의 원산지 검사, 검증 강화를 지시하였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심사를 강화하여 불법 환적 및 원산지 사기 방지 등 엄격성을 요구했다.

더불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무역구제 조사, 무역 구제 조치 적용 및 무역 구제 회피 등에 대한 유의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공고하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목재 합판(HS 4412.31, 4412.32, 4412.34, 4412.94 등)과 트럭 및 버스 타이어(HS 4011.2) 등이 그 예시이다. 해당 목록에 등재된 물품의 경우 대상 국가 수출 시 원산지 검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산 원재료 사용 및 베트남산이 아닌 품목을 베트남산으로 수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좀 더 유의가 필요하다.

구분	수출 대상국	품목	HS코드
목재 제품	미국	hardwood plywood 목재 합판	4412.31, 4412.32, 4412.33 4412.34, 4412.94, 4412.99
		부엌 및 욕실 캐비닛 (Wooden cabinets and vanities)	9403.40, 9403.60
		목재 침실 가구 (Wooden bedroom furniture)	9403.50, 9403.90
		목재 프레임 소파 (Seats with wooden frames, upholstered)	9401.61
건축 자재	미국	석영 인조 돌 (Quartz surface products)	6810.96





구분	수출 대상국	품목	HS코드
철강 제품	미국	부식 방지 탄소 강철 (CORE)	7210.30, 7210.41, 7210.49 7210.61, 7210.69, 7210.70 7210.90, 7212.30, 7212.40 7212.50, 7212.60
		파이프 및 튜브 (Pipe and Tube)	7306.30, 7306.50, 7306.19 7306.61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철강 와이어 스트랜드 (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7312.1
기타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Large residential washers)	8450.2
		대형 장착형 냉장고, 냉동고	8418.1
		트럭 및 버스 타이어 (Truck and bus tires)	4011.2

출처 : 산업무역부 발표문(10478/BCT-PVTM) 대상 목록 중 미국 대상 발췌

③ 대미 수입 확대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베트남 Pham Minh Chinh 총리는 베트남에서 수요가 높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공상부에 지시했다. 또한 최근 산업무역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베트남과 미국 간 농림수산물 무역 촉진 컨퍼런스(2025.5.9.)’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농업, 임업, 어업 수출입 분야의 기업에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해 긴급히 미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해석된다.



4. 기업의 원산지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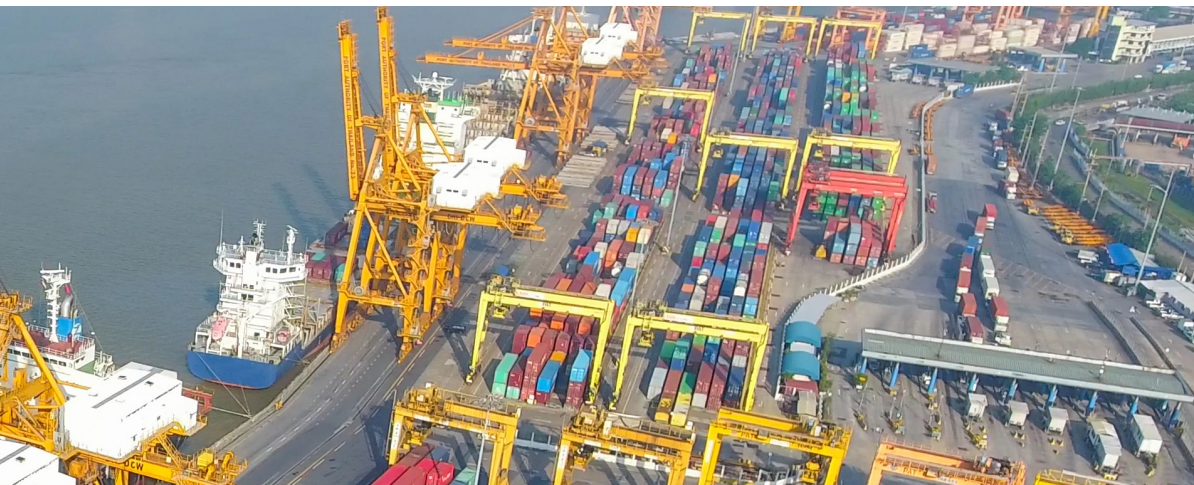
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행

미국 관세조치의 경우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원산지를 증빙하는 것과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 바이어들이 베트남 수출품에 대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행은 주로 수입국에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청하기 때문에 수출국 규정이 아닌 수입국 규정에 따라 원산지 기준을 확인 후 발행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미 연방규정(CFR 19) 및 CBP의 판단 기준에 따르게 된다.

한편, 2025년 4월 21일부로 제1103/QD-BCT 결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이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서 산업무역부 수출입관리국으로 이관되었으며, 전자 시스템인 Ecosys(<https://ecosys.gov.vn>)에서 발급이 가능해진 점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② 미국 사전심사제도(E-Ruling) 활용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는 미 연방규정 19 CFR 134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이 아닌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따라 CBP에서 자체 판단을 하게 된다.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출하려는





품목이 미국 기준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혼란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미국 CBP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E-Ruling) 활용이 권장된다. 수입자, 수출자, 해당 판전 요청 사안의 이해 관계자 및 대리인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며 원산지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및 FTA 적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사전심사 제도는 서면 또는 온라인(<https://erulings.cbp.gov>)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답변기한이 명시적으로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신청 후 답변을 받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급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CBP의 기존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CBP CROSS(<http://rulings.cbp.gov/home>)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품명 또는 세번으로 입력하면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있으니 유사 품목에 대한 기존 사례를 참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③ 원산지 검증 대응

미국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출국에서도 원산지 검증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베트남은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FTA 원산지 검증이 아닌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원산지 검증 방법은 직접 검증 방식으로 미국의 CBP에서 수출자 또는 수입자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CBP에서 원산지 검증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보 제공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인 CBP Form 28을 발송하게 된다. 이때 수입자 또는 수출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근거 자료와 함께 정보를 CBP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자료 중 영업비밀 사항으로 수입자에게 제공이 어렵다면 수출자가 CBP에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후 CBP에서는 결과 통지서(Notice of Action)인 CBP Form 29를 발송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산지, 품목분류 등이 불인정될 경우 추징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수출자는 원산지 검증을 대응하기 위해 수출하는 품목들에 대한 근거 자료 보관이 필요하다.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원산지 확인서, 수입신고필증, BOM(Bill of materials) 등의 자료 보관은 필수이다.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정에 따른 보관 의무는 없으나 수출 후 3년에서 5년까지는 보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한 결과문, 유사품목에 대한 결과문 등 원산지 판정에 근거가 되는 결정문이 있다면 해당 자료 또한 함께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검증 대응은 여러

자료와 사례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경험이 많은 원산지 전문가를 통해 판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5. 맺음말

미국은 베트남 수출 국가 중 금액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1,235억 USD로 전년 대비 18.1%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대미 무역흑자 증가는 동남아 국가 중 베트남이 높은 상호관세율로 정해지게 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73%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2024년까지 누계 기준으로 한국의 누적 투자액은 약 891억 달러로 베트남 최대 투자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무역 조치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향후 베트남 정부와 미국 간 협상이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진출 기업들 또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 대응과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를 바란다.

